



# 옥당골소식

제563호  
2022.10.25.(화)

##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 목 차

#### I. 군정 소식

1.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3
2.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4
3.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안내 .....	5
4.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협조 .....	7
5.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9
6.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10
7.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	11
8. 영광군 미등록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안내 .....	12
9.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13
10. 보훈·참전명예수당 안내 .....	15

11.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	16
12.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17
1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18
14. 치매 뇌(腦)인지강화 교구 대여제 운영 .....	19
15. 치매예방 뇌(腦)청춘 건강교실 운영 안내 .....	20
16.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안내 .....	21
17.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	22
18. 산불예방 안내 .....	23

### 목 차

#### II. 기타 소식

1. 반부패 제도·법령 안내 .....	24
2.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안내 .....	26
3. 보조금24 이용안내 .....	28
4.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	29
5.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30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 지원개요

- 신청접수: 2022. 9. 29.~
  - ┌ 신속보상 : '22. 9. 29.(목)~
  - └ 확인요청 : '22. 10. 4.(화)~
- ※ 확인요청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원대상: '22. 4. 1.~4. 17.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li> <li>■ 실내체육시설 ■ PC방 ■ 마사지업소·안마소</li> <li>■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li> </ul>
시설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실외체육시설</li> </ul>

- 지급금액: 보정률 100%(하한액 분기 100만원/ 상한액 분기 1억원)

### < '22.2분기 손실보상금 기본산식 >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방문 접수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영광군 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실시를 공고

###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공고

-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영광군
  -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기 간: 2022. 10. 13.(목)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 내 용: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 의 처: 영광군 원예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350-4667)

#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안내

농업법인 관리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

## □ (조사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조사대상) '21년 말 기준 법원 등기완료 및 '살아있는 등기' 상태인 농업법인

- 조사대상: 관내 농업법인 519개소

## □ (조사기간) 2022. 9. 1.~12. 31.(4개월)

## □ (조사항목)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 \* 1.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구분	조사항목
일반현황	소재지,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운영현황	운영, 미운영, 소재불명, 일반법인 전환
사업현황	사업범위(목적 외 사업 포함), 핵심사업
출자현황	농업법인 구성원 정보,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등
농지현황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현황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

## □ (조사방법) 법인 소재지 관할 읍·면 담당자의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방문조사

## □ (2022년 실태조사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년 실태조사	2022년 실태조사
조사주기	3년 단위	정기조사 : 1년 단위 수시조사 : 필요 시
조사대상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농업법인 전수	법원에 등기되어 있고, '살아있는 상태'인 농업법인 전수
활용자료	등기부등본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	<행정자료 추가> 국세청 자료(매출액, 주주현황) 농지와 자료(농업법인 소유 농지) 국토부 자료(농지 거래내역)
조사순서	우선순위 없음	중점조사 대상을 우선 조사
조사항목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이관
후속조치	(신설)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및 농지처분명령

## □ (2022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농업법인 관 리 (2022.5.18. 시행)	실태조사	정기조사 (3년마다)	정기조사(매년)  수시조사 (시장·군수·구청장 필요 시)	실태조사 주기 하위법령 위임
	후속조치	농업법인에 직접 청구	타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과세자료 등)	해산명령 청구 시 타기관 자료 획득 가능
농업법인 운 영 (2022.8.18. 시행)	설립·변경·해산	설립·변경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	설립·변경·해산 등기 전 지자체에(시·군·구) 신고 의무 신설  설립·변경·해산 등기 첨부 서류 추가 (지자체의 신고확인증)	법인 설립 전 시·군·구 사업범위 심사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해산청구 대상	부동산업 영위 - 해산명령 청구 후 과징금 부과	부동산업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과징금)

#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협조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나라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함

## □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 통보 대상자

순번	군번	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구분	가족관계	현지명주소	비고
1	0683849	박병호	1928-11-20	1955-03-03	순직	성순례(처)	①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② 전남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2	0655369	송환순	1927-02-16	1952-01-30	순직	김춘심(모)	①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	8838415	이석기	1929-05-08	1958-11-01	순직	이상옥(제)	① 전남 영광군 백수읍 흥곡리	
4	0624570	정동준 경동준 정돈준	1926-03-20	1952-04-07	순직	경공현(부)	①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② 전남 광양시 관서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9.11.5. - 묘비명 : 정돈준
5	9390811	김현규	1927-05-15	1953-09-16	순직	김만진(부) 임덕순(모)	①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6	9589645	최광복	1925-08-18	1954-03-14	순직	박용근	①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7	9970112	박홍수	1935-04-22	1957-11-07	순직	박군양(부)	① 전남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 ② 전북 고창군 무장면 만화리	
8	0657223	최기구 최기술	1926-02-08	1953-10-10	순직	최기록(형) 최영록(부)	①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176	
9	9589790	김려순 김염순 김현순	1932-03-27	1953-11-23	순직	윤인환(모)	①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②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③ 평북 용천 부라 원성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7.4.14.
10	9329376	김영환	1932-01-19	1957-05-05	순직	김점동(형)	①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부춘리	
11	9589193	윤위섭 윤증섭 윤승섭	1928-06-01	1954-10-09 1954-11-09	순직	이원선	① 전남 영광군 불갑면 안맹리 ② 함남 함흥시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7.4.24.
12	9673467	김동권 김점권	1928-09-10	1957-11-11 1957-11-12	순직	김문권(형)	①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② 황해 웅진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60.5.25.
13	0656846	최병연	1930-06-03	1952-02-01	순직	최정덕(부)	① 전남 영광군 군남면 ※ 군남면 오상 또는 오용	

순번	군번	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구분	가족관계	현지명주소	비고
14	9616557	이문정	1924-04-17	1955-04-29 1955-04-30	순직	김종섭(모)	①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 영광 남면 동운 ②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7.9.21.
15	9337379	박이봉	1933-09-18	1953-07-20	전사	박을양(모) 박대서(조카)	① 전남 영광군 봉남 ②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108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9.10.31.
16	9354620	양구용	-	1953-04-03	순직	김영철(모) 양관용 김영숙(모)	① 전남 영광군 염산면 ② 전남 영광군 부산용동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8.11.22.
17	9337385	오오차	1933-06-26	1953-01-18	순직	정미순(모) 박창래	①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9.10.31. - 소속 : 1훈련소 - 군번 : 933385

## □ 유가족을 찾았을 시

-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 042-550-7387, 042-550-7391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 044-200-7374, 044-200-7375

## □ 전사순직 통보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받는 혜택

### ○ 보훈급여금 수급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전몰·순직군경	166만 8천원	163만 8천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34만 7천원 ~ 138만 7천원)
재해사망군경	116만 8천원	114만 7천원	

- 국립묘지 안장 (본인 국립묘지 안장 및 배우자 합장)
- 의료·양로 지원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
  -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60% 감면
  - 보훈요양원·민간요양시설 이용 시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 지원  
(보훈지원은 ☎ 국가보훈처 대표번호 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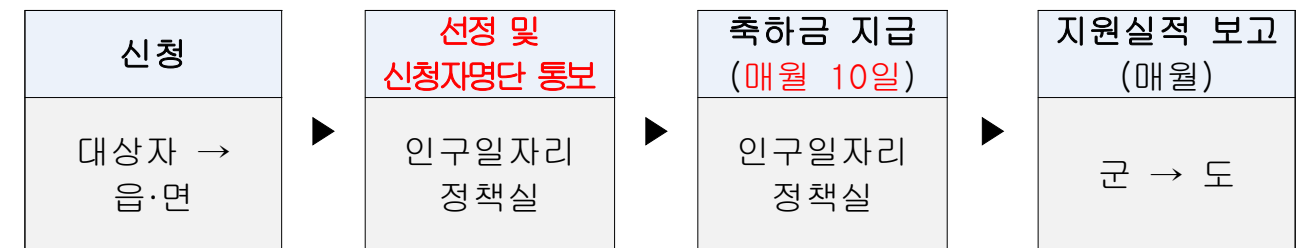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없음
  - ※ 다만,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요망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방 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 신청인이 금융기관 직접신청) → 지원결정통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673)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①'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만 4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1부부당 2백만원 ※ 영광군 결혼장려금과 중복지급불가
-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 지원절차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813)

##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성평등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영광군은 아빠의 육아를 응원 합니다! -

- 신청기간: 2022. 4. 6.~계속
- 지원대상: 남성 육아휴직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2022. 4. 6.일 이후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
  - ②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③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④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영광사랑카드
- 사용기간: 장려금 수령 후 2년(24개월)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매월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최초 신청시, 휴직대상아동 변경 시)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월 단위로 발급)
- 기타문의: 읍·면사무소 및 노인가정과 여성가족팀(061-350-5549)

## 영광군 미등록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안내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지원하여 국가수혜 사업신청 제척·건물보험 가입·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 해소

- 2022년도 사업분(100동) 접수기간: 2022년 3월 22일~12월 31일
  - ※ 사업기간/사업량 : 2022년~2024년(3년간)/총 300동
- 신청장소: 종합민원실 주택팀
- 지원사항: 건물도면 작성 및 현황측량성과도 작성
- 신청가능대상: 건축물대장 미등록 무허가 단독주택(창고, 점포 등은 제외)
  - 비도시지역의 건축법 개정 이전(2006. 5. 8.) 주택으로 200㎡미만이면서 2층 이하
    - 토지이음 등 확인결과 해당 주소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경우 도시지역 지정 이전 주택
    - 대지안의 공지 및 건폐율 등 적법한 주택
    - ※ 읍·면사무소에서 건물 재산세과세내역 등을 통해 신축년도 사전확인 후 상담
  - 토지 소유권 일치
    - 토지소유자와 불일치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지목이 전·답·임야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 ※ 대지 내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거나 타 필지로 건축물이 침범한 경우 신청불가
    - 무허가건축물: 건축법 개정 이전(2006. 5. 8.) 허가 없이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불법건축물: 건축허가(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건축물
      - 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의처: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 ☎061-350-4682)

#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여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

□ 자진신고기간: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년)

##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영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지하수 담당
- 신고서류: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시공업체 대행 가능)

구 분	제 출 서 식	구 비 서 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구 분	위 반 내 용	벌 칙 · 과 태 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 문의사항

- 영광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문의(☎061-350-5486)

## 보훈 · 참전명예수당 안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군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 신청권자: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유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자	비 고
영광군 보훈 명예수당 (매월 7만원)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
영광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8만원)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영광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매월 5만원)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 (매월 2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3만원)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6.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및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 자

- 문의사항: 영광군청 사회복지과(☎350-5813) 및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치매예방, 등록, 상담, 조기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통합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 영광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 용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1·2/치매감별검사-협약병원 의뢰)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운영
  - 치매안심마을 지정 유지 관리
  - 치매 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 배회어르신 지문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보급: 기기 및 이용료 지원
    -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제공 : 기저귀, 방수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등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컴퓨터운영 및 가가호호방문서비스
    -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가족교실(헤아림) 운영

- 문 의 : 영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50-4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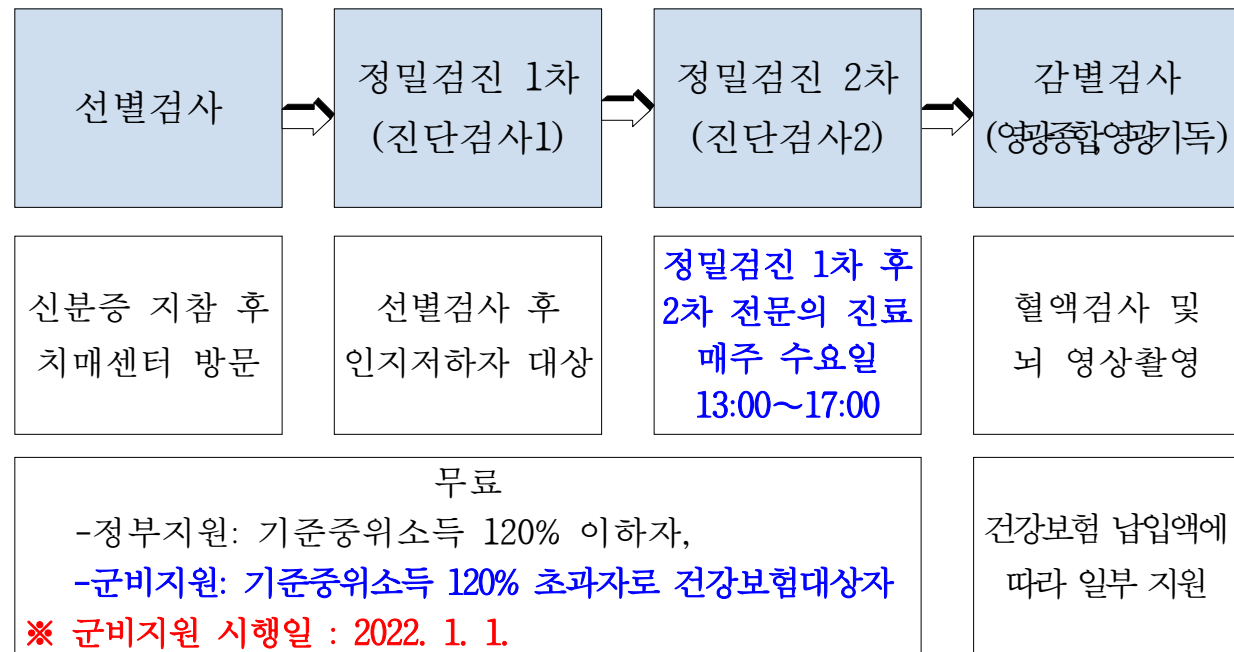
치매상담콜센터  
24시간, 365일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



##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상담실(2층)
-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내 용
  - 만 60세 이상 1년에 1회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검사(1차, 2차)실시
  - 진단검사 후 감별검사 필요시 협약병원(영광종합, 영광기독)의뢰
- 진단검사비(감별)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자
  - 검진장소 : 협약병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 지원금액 : 치매검사비 1인당 8만원 상한내 지원

### □ 검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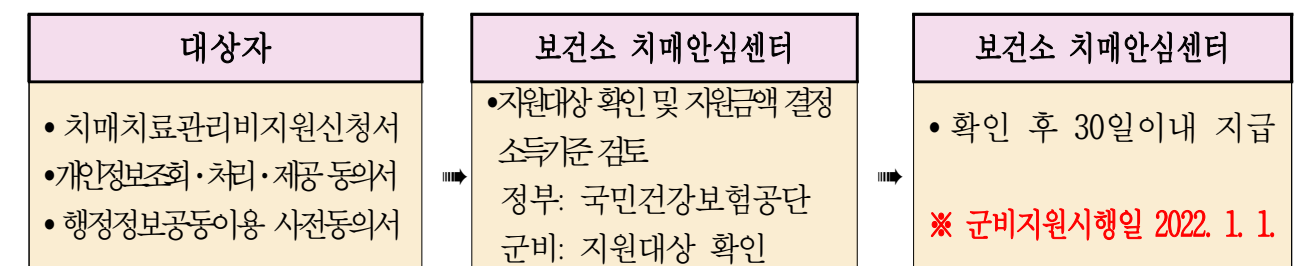


- 기 타 : 선별검사자 전원 치매사업 홍보물 제공(파스, 마스크 등)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5659, 350-4806)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기 간: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치매안심센터(2층)
- 대 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 군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한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금액: 치매 치료 약제비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서류
  -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② 처방전
  - ③ 병원 진료비 영수증 - **군비지원**
  - ④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약제비 계산서) - **군비지원**
  - ⑤ 통장사본 1부
  - ⑥ 행정정보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대리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내 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 이내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 3개월치 약을 8만원에 구입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

### □ 지원절차



- 문 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691, 350-4826)

## 치매 뇌(腦)인지강화 교구 대여제 운영

치매 환자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가족의 부양 감소를 위해 가정에서 인지 교구를 활용한 활동 강화로 치매예방 및 중증화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기 간: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치매안심센터(2층)
- 대 상: 60세 이상 지역주민 중 치매 예방 관리가 필요한 자 (치매환자,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 ※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 우선 배부함
- 대여기간: 1개월간 (1회 한도 내 연장 가능)
- 추진방법: 본인(보호자), 시설관리자 방문 수령 원칙
- 준 비 물: 신분증, 인지강화 교구 대여 신청서 작성
- 주요내용
  - 인지강화교구 대여 및 방역 건강관리 홍보물 배부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강화교구: 자석칠교놀이 외 6종
  - 코로나19 대응 건강관리 홍보물: 파스 외 1종
  - 대여사업 홍보 및 사용방법 안내 등
- 구성품목

인지강화교구(7종)	건강관리용품(2종)
자석 칠교놀이, 퍼즐(2개), 치매 가이드북(리플렛), 어른들의 추억 색칠하기(색연필 포함), 고리던지기, 볼트·너트 조이기, 기억건강 놀이책	파스(3매), 마스크(3매)

※ 인지강화활동 교구 품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06, 350-4817)

## 치매예방 뇌(腦)청춘 건강교실 운영 안내

복합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시키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회복 및 인지기능 향상에 기여

- 기 간: 연중(월~금요일, 기수별 월 8회)
- 장 소: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보건기관 등
- 대 상: 60세 이상 지역주민
- 수행인력: 외부강사 및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 내 용
  - 인지선별검사 및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 안내
  -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리 및 예방교육
  - 치매예방 인지활동 워크북 활용 인지학습 교육
  - 소근육 동작 활동을 위한 치매예방 공예치료
  - 치매예방을 위한 체조 등 운동치료
  - 치매예방 집중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 뇌에 좋은 영양식 만들기 체험활동
  -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 및 뇌 건강 체조(동영상)
  - 전·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 선정절차
  - 치매예방교실 운영 신청 상시 접수(최대인원 20명)
  - 치매안심센터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경로당 우선 선정 (기존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후 순위)
  - 치매예방교실 운영 확정 후 및 프로그램 운영
- 문 의: 영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50-4806, 350-5098)

##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안내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상담실(2층)
- 대 상 : 지역사회 내 치매안심 홍보 가능 개인사업자
  - 사업장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코드)가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내 용
  - 개인사업장(슈퍼, 미용실, 세탁소)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 주요활동
  - 치매에 관심 갖는 분들에게 치매안심센터 홍보
  - 치매관련 정보 제공(리플렛, 포스터 비치 등)
  - 배회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임시보호 역할
  - 치매안심가맹점 안내판 게첩 및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 지원 등
- 준 비 물 :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06, 350-4998)

##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실종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와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대 상 : 만 60세 이상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
- 내 용
  - 배회감지기 대여 및 가입비 등 사용료 전액 지원
  - 경찰서 시스템과 연계한 치매환자 지문, 사진 등록
  - 배회가능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지원 등
- ※ 치매어르신이 실종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청 실종신고 ☎112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2,3)
  -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 코드가 표기 된 처방전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4)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25)

# 산불예방 안내

## 산에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

-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기는 **봄철 미세먼지, 산불발생 주요 원인**입니다.

##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영농부산물(낙엽,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영광군 산불대책본부(061-350-5351),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119, 경찰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수로 낸 산불도 강력 처벌대상

- 벌칙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산림주변 소각할 경우**: **1차적발 30만원, 2차적발 40만원, 3차적발 50만원** 과태료 부과
  - 산림 인접지 외 논·밭에 불 놓다 소방차 출동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제공 :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 061-350-5351

# 반부패 제도·법령 안내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내용과 제·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청렴 사회 제고

## □ 공익신고자보호법

- 주요내용
  -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고자 책임 감면 및 신변보호 조치 요청 가능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척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패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구조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정승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상담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2-778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42-7748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세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개정내용(2022. 7. 5. 시행)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 확대
-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이란?(2022. 5. 19. 시행)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

○ 신고·제출의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

신고·제출의 의무	제한·금지 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안내

### 공유누리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www.eshare.go.kr

공유누리 앱은 앱 마켓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유누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01**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지역, 키워드, 지도, 카테고리 등 다양한 검색경로를 통해 쉽게 찾아보세요.

**02** 공유지도를 활용해 나의 현 위치, 또는 내가 선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원들을 찾아보세요.

**0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이용내역과 유사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빠른 검색 및 자원추천 등)를 제공합니다.

### 공유누리에는 어떤 자원들이 등록되어 있나요?

기관별 공공자원 개방·공유 현황 (22.2.28. 기준)

구분	기관수	합계	회의실·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문화시설	연구·실험장비	물품 등
합계	475	141,626	10,287	7,925	6,055	6,239	90,809	20,311
중앙행정기관	35	2,680	829	1,107	321	333	13	77
지자체	243	44,039	8,666	5,849	5,283	5,370	-	18,871
공공기관	197	94,907	792	969	451	536	90,796	1,363

※ 개방·공유 주요자원  
 - 시설: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캠핑장, 숙박시설, 전시공간 등  
 - 물품: 방역분무기, 유아용품, 장난감, 생활공구, 휠체어, 혈압측정기, 라돈측정기, 연구·실험장비, 농기계, 캠핑용품, 행사물품 등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전국 공공개방자원 단일 포털 제공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국민의 기회비용 절감



R&D 실험 기자재·강의·지식 등  
무형의 자산 공유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상승



### 위치정보 활용 및 푸시알림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주변의 공유자원을 추천하고, 푸시알림을 통해 예약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시간의 제약없이 예약관련 문의에 실시간 답변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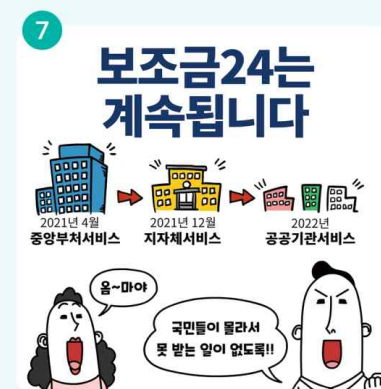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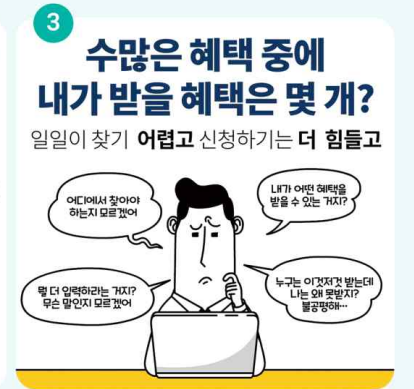


### 음성-텍스트 변환 기능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보다 쉽게 조회 및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24 이용 안내

정부24가 만든 국가 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24!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궁금하다면?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정부24  
<https://www.gov.kr>



#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전라남도

마음을 함께하는 전남사랑 애 서포터즈 행복한 이음

가족, 지인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농수축산물 구매 촉진 및 관광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등을 함께 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가입대상 전남 이외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혜택 전남사랑도민증 모바일 발급 예정(할인가맹점 150개 여소)  
※ 농수축산물 구매 및 숙박·레저·체험 등 입장 할인

가입방법 ① 검색창에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9월 9일 부터)  
② "서포터즈 가입 신청" 게시판(도 누리집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문의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출향도민팀 ☎061-286-7791~4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질병관리청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

• 2022-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9.1.1. ~ 2022.8.31. 출생)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한 어린이는 실제 생년월일 기준

| 지원기간 | 2회 접종대상자 2022.9.21.(수) ~ 2023.4.30.(일)  
1회 접종대상자 2022.10.5.(수) ~ 2023.4.30.(일)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 의사와 상담 필요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1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4 예방접종 인우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5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예방접종도우미 검색하기  
검색창에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해주세요.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https://nip.kdca.go.kr/>  
스캔하기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KMA 대한의사협회

기름기 대체되도록 대우와' 하루가 두 번 이상  
머그며 이유유를 두번 후 씻어  
씻을 후 씻을에서 30~30분



이쁘기과 유동 YI 노녀노예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마포구 122빌딩 2층



국가예방접종도우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마포구 122빌딩 2층

예유된을공수미 마포구

이쁘기과

※ 예유된을공수미 수회하에어 화하 가은 (하하하하 유동 하 화하 하)

이쁘기과 하 하하

이쁘기과

2022.10.17.(월) ~ 2022.12.31.(토)

이쁘기과

※ 머그는 이쁘기과 예유된을공수미 수회 하에 유하하에 하은 가은하하하

머그 여를 화하하 머그 (하하하하)

2022-2023절기 머그는 이쁘기과 국가예유된을 노녀 하하

머그  
이쁘기

머그는 이쁘기과 노녀 하하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지원대상

지원기간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2.(수) ~ 2022.12.31.(토)

만 70~74세 (1948.1.1. ~ 1952.12.31. 출생자)

2022.10.17.(월) ~ 2022.12.31.(토)

만 65~69세 (1953.1.1. ~ 1957.12.31. 출생자)

2022.10.20.(목) ~ 2022.12.31.(토)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예방접종도우미

검색창에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해주세요.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https://nip.kdca.go.kr/>